

이순신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안

(주철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238
----------	-------

발의연월일 : 2025. 7. 3.

발 의 자 : 주철현 · 한정애 · 문대림
조계원 · 김문수 · 위성곤
윤준병 · 이병진 · 양문석
어기구 · 조인철 · 안호영
천하람 · 민형배 의원
(14인)

제안이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국난을 극복한 위인으로서 국민적 존경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추앙받고 있는 인물로, 자기희생과 헌신의 ‘이순신 정신’을 통해 국민적 자부심과 애국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생애, 사상과 업적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 · 교육 및 기념사업은 미흡하고, 지역이나 민간 차원에서 기념사업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고 이를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 차원에서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 · 교육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게 하고,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체계화하여 세계

적으로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연구·교육하고 이를 전파하는 기념사업을 수행하여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국민적 자부심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유산청장은 이순신기념사업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마다 이순신기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 다. 이순신기념사업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 소속으로 이순신기념사업위원회를 둠(안 제6조).
- 라. 이순신기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을 둠(안 제7조).
- 마. 국가유산청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나 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이순신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연구·교육하고 전파하는 기념사업을 수행하여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국민적 자부심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이순신기념사업”이란 이순신 장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보전·연구·교육·전파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는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연구·교육하고 전파하는 이순신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순신기념사업을 조성·지원하는 경우 이미 구축된 시설과 기반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고, 지역 간 협력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순신 장군의 업적 및 정신과 관련된 연구·교육의 활성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이순신기념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각종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이순신기념사업에 적용되는 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이순신기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이순신 기념사업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마다 이순신기념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 등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순신기념사업의 목적
2. 이순신기념사업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3. 이순신기념사업의 거점지구 위치
4. 그 밖에 이순신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이순신기념사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이순신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이순신기념사업의 중

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 소속으로 이순신기념사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고, 당연
직 위원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 된다.

1.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관계 시·도지사가 민간전문가로 추천하는 사람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원의 과반수
를 이순신기념사업에 공헌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
문가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7조(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 ① 이순신기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
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이순신기념사업추진단(이하 “추진
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이순신기념사업의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4. 이순신기념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 및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추진단의 조직·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나 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국가유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순신 장군 관련 민간기관 또는 민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